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유은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1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4. 17.

발의자 : 유은혜 · 김병욱 · 김민기
조승래 · 정춘숙 · 안규백
김성수 · 오영훈 · 노웅래
인재근 · 손혜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서울대학교 교원의 자격·임면·복무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사립학교법」을 준용하도록 하고, 「사립학교법」은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·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대학교 교원은 국·공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「교육공무원법」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음.

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특례를 「교육공무원법」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

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
(안 제15조의2 신설).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) ① 제15조에 따른 교원 중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·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·공업·금융업,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겸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「상법」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·방법·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·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15조의2(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) ① 제15조에 따른 교원 중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·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·공업·금융업,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)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겸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「상법」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·방법·절차 및 제2항</p>

	<p><u>에 따른 보고의 방법·절차 등</u> <u>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
--	---